

**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(안)심사보고서**  
**(의안번호 제57호)**

- '99. 2. 26.
- 도시건설위원회  
위원장

### 1. 심사정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'99. 1. 30 서초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'99. 2. 4
- 다. 상정일자 : '99. 2. 26,
- 라.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: 제8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 
제1차 회의 상정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토목과장 임영종)

#### 가. 제안이유

-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한 도시건설공사가 복잡 대형화 함에 따라 필요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

- 기능 (안 제2조)
  - 도시시설의 안전진단, 복구대책 등의 기술관련사항
  - 교량등 주요공사의 설계, 시공등의 기술관련사항
  - 토질, 구조등 안전검토가 필요한 분야
  - 설계등 용역관련사항
  - 새로운기술, 공법 등의 한계와 범위 등에 관한 사항
  - 대형공사의 일괄입찰, 대안입찰 등 입찰에 관한 사항
  -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자문 요청한 사항

○ 구성(안 제3조)

- 위원은 토목(구조, 토질, 시공, 하천, 도로, 수문 등) 교통, 건설안전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
-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

○ 위원회의 회의(안 제6조)

-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
-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

다 참고사항

- 관련법규 :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7
- 예산조치 : 2,000천 원 ('99년 예산에 반영됨)
- 협의사항 : 필요없음
- 기 타 : 없음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 보고자 : 전문위원 이종현 )

가. 검토내용 : 생략(검토보고서 참조)

나. 검토결과

서울특별시서초구기술자문단운영규정(1993.12.31 개정)에 의하여 '94. 1. 20 기술자문단을 구성,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바,

주요내용은

- 안 제1조 :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,
- 안 제2조 :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3조 :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,
- 안 제5조 :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,
- 안 제7조 :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에 응하는 사항을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고 있으며,
- 안 제10조 :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,
- 안 제12조 :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## □ 검토의견

-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에 의하면 “건설공사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 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에 대하여 벌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, 운영할수 있다”라고 되어 있으며,
- 1998년 말 까지 기술자문단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1994. 1.20 구성하여 '96. '97년도에는 각 9회씩 개최, '98년도에는 4회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음.
- 1999년 예산서상 운영수당(기술자문위원회 위원) 이 200만원 책정 되어 있음.(예산서 633쪽)
- 위와 같은 사유로 통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문) 기존의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과 본 조례 내용의 상이점에 대한 설명과 기술자문을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회사 경우 기술자문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지?
- 답) 운영규정과 본 조례는 차이가 거의 없으며, 교수, 기술사 등 전문가일 경우는 기술자문을 할수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회사에 소속된 분은 없음
- 문) 기존 건설기술자문단 위원수는 23명으로 되어있고, 새로 제정되는 조례는 17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는데 위원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?
- 답) 현재 위원명단중 토목이 아닌분야의 위원은 빼고 주로 토목분야에서 구조, 토질, 시공, 도로, 교통 및 하천을 다루는 수문, 건설안전등 이렇게 구성할 예정임.
- 문) 제13조 운영세칙에 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」라고 되어 있는데 정할수 있는 한계는?
- 답) 특별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운영세칙에 규정할 예정임.

5. 토론자 및 토론요지 : 없 음.

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.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#### 10. 제계자구 정리내용

- 안 제6조(위원회의 회의)제2항중 "과반수이상"을 "과반수"로 정정